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의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등 허가 사무를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051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항공안전기술원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안전법」 제108조, 제124조 및 제135조제8항제4호

· 제5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00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를 “위하여”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를 “기술원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술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경량항공기 시험비행등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10호의2서식의 경량항공기 시험비행등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를 “위하여”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를 “기술원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기술원의 장”으로,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시험비행을 허가”를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19호의2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등 허가서를 발급”으로 한다.

제306조제6항 중 “별지 제119호의2서식”을 “별지 제119호의3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1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9호의2서식을 별지 제119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19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등 허가에 관한 경과조
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4조제2항·제3항 및 제304조제2항
·제3항에 따라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시험비행등 허가 신청에 관하
여는 제284조제3항·제4항 및 제304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험비행등 허가 업
무를 수행한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0호서식]

경량항공기 시험비행등 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명/명칭	연락처
	주소	

경량항공기	종류		형식	
	등록부호		제작번호	
	제작연월일	이착륙형식		좌석수
	설계자		제작자	
	캐노피 제작자	캐노피 형식/크기		캐노피 익면적(투영면적)

시험비행 계 획	일시 또는 기간	구역
	비행목적/방식	시험비행 횟수
	경로/고도	

조 종 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번호	

「항공안전법」 제10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4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시험비행등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항공안전기술원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해당 경량항공기에 대한 소개서(설계개요서, 설계도면, 부품표 및 경량항공기의 제원을 포함합니다) 1부 2. 시험비행등 계획서(시험비행등의 기간, 장소 및 시험비행등 점검표를 포함합니다) 1부 3. 설계도면과 일치되게 제작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4. 신청인이 제시한 시험비행등의 범위에서 안전 수준을 입증하는 서류(지상성능시험 결과 및 안전대책 등) 1부 5. 신청인이 제시한 시험비행등을 하기 위한 수준의 조종절차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정비방법을 명시한 서류 1부 6. 경량항공기 사진(전체 및 측면사진을 말하며, 전자파일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 각 1매 7. 그 밖에 시험비행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서 수령
신청인		항공안전기술원 (인증담당부서)		항공안전기술원 (인증담당부서)		항공안전기술원 (인증담당부서)	결과 통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허가서 번호 Permit No.
경량항공기 시험비행등 허가서 Test Flight Certificate of Light Sport Aircraft			
1. 국적 및 등록번호 Nationality and registration marks	2. 경량항공기 제작자 및 경량항공기 형식 Manufacturer and manufacturer's designation of aircraft	3. 경량항공기 제작일련번호 Aircraft serial number	
4. 시험비행 목적 Test Flight Purpose		5. 조종사 성명 및 자격번호 Pilot Name and Certificate No	
6. 시험비행 기간 / 횟수 Test Flight Period / Number of Times		7. 시험비행 구역 Test Flight Area	
8. 이 증명서는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제10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4조제4항에 따라 경량항공기의 연구·개발 또는 성능개량 목적으로 허가된 것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비행 계획서 및 안전대책에 따라 시험비행할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9. 제한사항: Limitations			
10. 허가서 만료일: Validity Period			
11. 발행연월일: Date of issuance			
항공안전기술원장			직인
Korea Institute of Aviation Safety Technology			

160mm×136mm[백상지(120g/㎡)]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등 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성명/명칭			연락처	
	주소				
비행장치	종류			형식	
	신고번호			제작번호	
	제작연월일		이착륙형식	좌석수	
	설계자			제작자	
	캐노피 제작자		캐노피 형식/크기	캐노피 익면적(투영면적)	
시험비행 계 획	일시 또는 기간			구역	
	비행목적/방식			시험비행 횟수	
	경로/고도				
조 중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번호				

「항공안전법」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4조제3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등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항공안전기술원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소개서(설계개요서, 설계도면, 부품표 및 비행장치의 제원을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 시험비행등 계획서(시험비행등의 기간, 장소 및 시험비행등 점검표를 포함합니다) 1부	
	3. 설계도면과 일치되게 제작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4. 신청인이 제시한 시험비행등의 범위에서 안전 수준을 입증하는 서류(지상성능시험 결과, 안전대책 등) 1부	
	5. 신청인이 제시한 시험비행등을 하기 위한 수준의 조종절차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정비방법을 명시한 서류 1부	
	6. 초경량비행장치 사진(전체 및 측면사진을 말하며, 전자파일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 각 1매	
	7. 그 밖에 시험비행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서 수령
신청인		항공안전기술원 (인증담당부서)		항공안전기술원 (인증담당부서)		항공안전기술원 (인증담당부서)	결과 통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절지(80g/㎡)]

[illegible]

	제110호의2서식의 <u>경량항공기 시험비행등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u>
③ <u>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경량항공기 시험비행등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시험비행을 허가해야 한다.</u>	<삭 제>
④ (생 략)	② (현행 제4항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304조(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등 허가) ① (생 략)	제304조(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등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시험비행 등(이하 이 조에서 “시험비행등”이라 한다)을 <u>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u>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등 허가 신청서에 해당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등의 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등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다음	② ----- ----- <u>위하여</u> ----- ----- ----- ----- ----- ----- ----- ----- ----- -----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u>국토교통부장관에게</u> 제출해야 한다.	----- 기술원의 장에게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u>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등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시험비행을 허가해야 한다.</u>	③ <u>기술원의 장</u> ----- ----- ----- ----- -----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19호의2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등 허가서를 발급-----.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① ~ ⑤ (생 략)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25조 제5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u>별지 제119호의2서식의</u>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 행정처분 대장에 작성·관리하고, 그 처분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 통지해야 한다.	⑥ ----- ----- ----- <u>별지 제119호의3서식</u> ----- ----- ----- -----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